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45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송부를 명하고, 검사장이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내이송 및 국외이송의 집행 절차 전반에서 지방검찰청·지청 및 그 장을 기준으로 관련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수사기관의 관계를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검찰청 관련 기관 명칭과 법률상 약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내·국외이송된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과 석방 등은 수사가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므로 검사의 관련 권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검찰청 및 검사장 관련 명칭을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장으로 정비하되, 국내·국외이송의 집행과 자유형의 집행·석방 등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 집행체계의 연속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국내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송부를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명하도록 한 절차를 요청하도록 변경하고, 검사가 자료수집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12조).

나. 국내이송의 집행 및 국내이송된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및 검사장 관련 명칭과 약칭을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장에 맞게 정비하되,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함(안 제13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

다. 국외이송을 위한 확인·자료수집 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공소청장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외이송명령 및 국외이송지휘 등 형 집행에 관한 절차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안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법무부장관과 공소청장등 사이의 명령·요청·보고 및 서류송부에
관한 절차가 검찰총장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된 기관 명칭과
요청 절차에 맞게 정비함(안 제34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등””을 ““공소청장등””으로, “명할”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령을 받은 검사장등”을 “요청을 받은 공소청장등”으로,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검사는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공소청장장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검사장등에게”를 “공소청장등에게”로, “검사장등이”를 “공

소청장등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① (생략)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u>지방검찰청</u> 또는 <u>지청의 장</u> (이하 “ <u>검사장등</u> ”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u>명할</u> 수 있다.	② ----- ----- ----- <u>지방공소청</u> ----- -----“ <u>공소청장등</u> ”----- ----- ----- <u>요청할</u>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명령을 받은 검사장등</u> 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u>취할</u> 것을 <u>명하여야</u> 한다.	③ ----- <u>요청을 받은 공소청장등</u> ----- ----- <u>하게 할 수 있다.</u>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검사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검사</u> 는 필요한 때에는 <u>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u>	④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검사는 <u>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u>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u>검사장등</u> 에게 국내이송을 <u>명하여야</u>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 ----- ----- ----- <u>공소청장등</u> ----- ----- -----.

② · ③ (생략)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수 개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취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철회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 등에게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 공소청장등-----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illegible]

-----공소청

장등-----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②검사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석방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소속 검사에게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국외이송의 요건) ① (생략)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확

_____.

② 공소청장등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
의 변경) ①-----

공소청장등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외이송의 요건) ① (현
행과 같음)

②

인을 명령받은 검사장등이 지정한 검사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

-----공소청장장등-----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 --

-----공소청장등-----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공소청장등-----

-----.

②-----

--공소청장-----

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u>검사장등에게</u>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u>검사장등이</u>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검찰총장 경유) ----- ----- <u>공소청장등에게</u>----- -----<u>공소청장등이</u>--- ----- ----- -----.
---	---